

수원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54974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차지윤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1. 4. 27. 체결된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취소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자동차등록소 2021. 4. 27. 접수 D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105998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4. 23. ‘C은 원고에게 7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자동차 매매 등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C의 소유였는데, C은 2021. 4. 20.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 4.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자동차등록소 접수 D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21. 4. 20.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대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F 사이의 자동차 매매 등

피고는 2021. 4. 21. F과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등

가. 원고의 주장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지인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피고는 C의 채무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3. 판단

설령 C이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여 사해행위,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C의 재산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압류나 저당권 등 권리제한사항이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21. 4.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C에게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

③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00,000,000원은 당시 같은 차종 및 연식의 자동차에 관한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정식 수입된 자동차가 아니라 일본에서 직수입된 자동차여서 공식수리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고 사고이력 등에 관하여 검증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거래된다고 주장하는 점, 중고자동차의 거래 특성상 자동차의 상태, 시장 상황, 매매당사자의 사정 등에 따라서 매매대금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점,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매매대금 100,000,000원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현

목 록

1. 등록번호 : (차량번호 1 생략)

제원관리번호 : 1002-02590-0002-1320

차 명 : 벤츠S560 4MATIC

차 종 : 승용 대형

차 대 번 호 : G

원동기의 형식 및 연식 : 176 980 2020년식

사용본기지(차고지) : 경기도 수원시

등록연원일: 2020. 7. 28.¹⁾(최초) 2021. 4. 27.(명의이전), 끝.

1) 소장에 첨부된 목록에는 '2020. 7.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 7. 28.'의 오키로 보인다.

